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5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[안전도시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안전도시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- 행정안전부의 안전보안관 표준 조례안에 따른 제정 권고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-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,
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위촉,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선출,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7조, 제8조, 제9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, 관리 및 해촉,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. 4. 21일부터 5.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3. 5. 18일 달서구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생활 속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오니,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| 00923072 |
|------------|----------|

제출연월일: 2023. 5. 26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안전도시과장)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
-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제시
- 안전보안관에 대한 용어 정의

나. 위촉, 교육 및 임기, 대표단 구성, 활동(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)

- 위촉 및 대표, 부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
- 교육 및 임기, 활동에 관한 사항

다. 활동 지원, 관리 및 해촉, 표창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

- 예산 범위 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 관리 및 표창에 관한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붙임 참고

나. 예산 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3. 4. 21.~5. 11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해당

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 · 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안전보안관”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안전보안관의 위촉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30명 이내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(이하 “안전보안관”이라 한다)으로 위촉한다.

1. 재난·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
3.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, 학교, 기업의 직원
4. 재난·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
5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

제4조(교육 및 임기)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대표단 구성)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,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.

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보안관의 활동)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
2.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
3.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
4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활동 지원 등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관리 및 해촉)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 함이 부적합한 경우
3. 그 밖에 질병,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표창) 구청장은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,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【관계법령】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 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 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 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 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 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 - 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 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